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 요령 개정 취지 및 신구조문

1. 개정취지

방위사업청 관련규정 개정, 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성실수행 인정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주관기업 선정평가 내실화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청 관련규정 변경 내용 반영

- 1) 기술료를 정액기술료(기준)와 경상 기술료(신설)로 구분(제35조, 별지 2-1, 별지 3-7)
- 2) 전문기관(기품원) 제재 및 환수 임무 추가(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 3) 정부지원금에 대한 채권 확보 제도 폐지(제32조)
- 4) 부채비율, 채무불이행확인 기준일자 변경(제14조)
 - * 접수마감일 → 협약예정일
- 5) 우대·감점 적용 기준 변경(제16조)
 - * 최대 3%이내에서 우대·감점 합산 적용
- 6) 협약변경 시 방사청 승인 대상 축소 및 협약변경 신청가능기한 설정(제20조, 제22조의 2)
 - * 개발자금의 규모, 지원내용, 협약조건, 개발기간 연장 → 정부지원금 총액 증가
 - * 협약변경은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만 신청 가능
- 7) 정산시기를 '분기 1회'에서 '년 1회'로 조정 (제30조)
- 8) 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제출에 '성실수행' 추가(제32조, 별지 2-1)
- 9) 주관기업에서 지재권 출원 시 국가소요여부에 대한 심의 후 출원가능(제34조, 별지 2-1)
- 10) 기타 내용 명확화 등 문구 수정(별지 2-1)

나. 방사청 「성실수행 인정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반영

- 1) '성실수행 인정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성실성을 중심으로 평가기준 개선(별지 4-5, 별지 4-6)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참조

2) 위원회 위원 제외 기준 추가 및 '보류' 절차 명확화(제8조, 별지 4-10)

*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미래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참조

3) 실패과제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책보고서 제출 및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최종평가 배점 감점(제재)(제23조, 별지 3-2, 별지 4-5, 별지 4-6)

다. 주관기업 선정평가 내실화를 위한 절차 개선(제15조, 제16조)

1) 현장평가 항목 중 적절하지 않은 사항(연구개발투자비율 등) 삭제, 평가 항목 명확화 및 항목별 평가 요령 추가 (별지 4-3)

라. 기타 사항

1) 방사청 규정과 상이한 사항 수정(제31조, 제34조, 제35조)

2) 오기 수정, 용어통일 및 문장 명확화(제16조, 제25조, 별지1-1, 별지 1-2, 별지 1-2-1, 별지 1-6, 별지 2-1, 별지 3-2, 별지 4-5, 별지 4-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목 차	개정안 목 차	비고
제32조 (채권확보) 제33조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신설) (신설) 제8장 기술료 징수 및 활용 제34조 (기술료 징수 및 활용) 제35조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삭제) 제32조 (연구개발 결과 활용)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제 및 환수) 제34조(결과물의 귀속) 제8장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제35조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조항 및 제목조정
제8조(지원사업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⑤ (생략) 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기술진흥센터장이 ~ 정한다. 1. 방사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담당 부서장(당연직) 2. ~ 5. (생략) ⑦ (생략) ⑧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기술진흥센터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전과 이해관계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 심의가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기술진흥센터장이 ~ 정한다. 1. 방사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담당(당연직) 2. ~ 5. (현행과 동일) ⑦ (현행과 동일) ⑧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련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관련사유를 명시하여 의결을 보류하며, 사업관리부서장은 관련내용을 보완 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⑨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의결 보류 절차 추가 (감사결과 반영) 위원 제척 기준 구체화 (감사결과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촉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내 제기된 대한민국(소관청이 방위사업청인 경우에 한함) 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이 당사자인 소송·신청·중재사건에서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이거나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촉 예정일 기	

현행	개정안	비고
⑩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안전 심의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 최근 3년 내 개최된 방위사업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를 대리한 변호사이거나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거나,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경우 ⑩ 사업주관부서는 개회 예정인 위원회에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을 고지하고 위원으로부터 본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제9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밝히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 및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⑫ 사업주관부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제9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4-10]를 제출받아야 한다. ⑬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안전 심의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 제척 관련 업무절차 추가 (감사결과 반영) 위원 제척 관련 업무절차 추가 (감사결과 반영) 위원 제척 관련 업무절차 추가 (감사결과 반영) 조항추가에 따른 번호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제14조(신청업체 자격여부 검토 등) ① 사업주관부서는 제13조에 의하여 과제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주관기업에 대하여 주관기업의 자격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 4. (생략) ② 평가·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업체 자격여부 검토 등) ① 사업주관부서는 제13조에 의하여 과제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주관기업에 대하여 주관기업의 자격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협약예정일자를 기준으로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 4. (현행과 동일) ② 평가·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호별 기준일에 따라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접수마감일 → 협약예정일)
제16조(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① 사업주관부서는 평가대상 과제별로 국산화 개발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전문가 2~3인과 필요시 체계/부체계업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팀을 구성하며 평가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 사항 가 시 세부내용은 [별지 4-3]에 따른다. 2. ~ 5. (생략)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16조(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① 사업주관부서는 평가대상 과제별로 국산화 개발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전문가 2~3인과 필요시 체계/부체계업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팀을 구성하며 평가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지 4-3]에 따른다. 2. ~ 5. (현행과 동일) ② ~ ④ (현행과 동일)	오기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⑤ 주관기업 선정 평가 시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에서 정한 가점기준표와 같이 우대 또는 감점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항목이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가점과 감점을 받은 항목만 인정하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 가장 큰 가점과 가장 큰 감점 점수를 합산한다 ⑥ (현행과 동일)	⑤ 주관기업 선정 평가 시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3% 범위에서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⑥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상세화 개정)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 ② (생략) ③ 사업주관부서는 개발대상 품목, 개발자금의 규모, 지원내용 등 협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업 및 협력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사업주관부서는 개발대상 품목, 개발자금의 규모, 지원내용 등 협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업 및 협력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의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협약의 변경은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만 요청할 수 있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및 문장순화
제22조(개발 및 과제관리) ① ~ ④ (생략) ⑤ 사업주관부서는 ~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⑨ 특별평가 결과 과제의 중단,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 및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 ⑩ ~ ⑪ (생략)	제22조(개발 및 과제관리)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사업주관부서는 ~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 및 제재 대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 ⑧ (현행과 동일) ⑨ 특별평가 결과 과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중단 및 제재 대상 여부를 심의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 및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	심 의 내 용 명확화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및 심 의 내 용 명확화

현행	개정안	비고
	⑩ ~ ⑪ (현행과 동일)	
제22조의 2(개발기간 연장) ① ~ ③ (생략) ④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 개발기간 연장여부를 아 인정되는 경우 방사청(방산진흥 국)에 개발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 한다. ⑤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방산진흥국)에서 개발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주관기업에 통보 및 개발협약을 변경하며, 그 결과를 연장사유와 함께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업체(해당시)에 통보한다. ⑥ 주관기업은 개발기간연장을 위한 개발협약이 체결되면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의 채권확보 기준에 따라 정 부출연금 지급 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개발기간 연장) ① ~ ③ (현행과 동일) 삭제 ④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 개발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방사청(방산진흥국)과 주관기업에 통보 및 개발협약을 변경하며, 그 결과를 연장사유와 함께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업체(해당시)에 통보한다. 삭제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23조(최종보고서 제출) ① (생략) 신설 ② 사업수행부서는 ~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최종보고서 제출) ① (현행과 동일) ② 주관기업은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과 종료시 까지 획득한 사항의 활용방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부서는 ~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실 패시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감사결과 반영)
제24조(최종평가) ① ~ ⑥ (생략)	제24조(최종평가) ① ~ ⑥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비고
⑦ 사업주관부서는 ‘실패’ 판정과 제에 대해서는 개발 지원금 환수, 제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추가)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⑦ 사업주관부서는 ‘실패’ 판정과 제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환수, 제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3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용어통일 제재관련 조항추가
제25조 (후속조치) ① (생략) ② 사업주관부서는 ‘실패’과제의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 개발 지원금 환수’, ‘제재’인 경우 관련 조치를 즉시 취한다. ③ (생략)	제25조 (후속조치)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업주관부서는 ‘실패’과제의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 정부 지원금 환수’, ‘제재’인 경우 관련 조치를 즉시 취한다. ③ (현행과 동일)	용어통일
제29조(개발자금의 집행 및 관리) ① ~ ② (생략) ③ 개발자금의 사용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9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개발자금을 집행한 경우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 ⑪ (생략)	제29조(개발자금의 집행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개발자금의 사용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9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개발자금을 집행한 경우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 ⑪ (현행과 동일)	제재관련 조항추가
제30조(사업비의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① (생략) ② 사업주관부서는 정부지원금의 정산금액,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과제 포기 또는 중단에 의한 반납·환수 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방사청(방산진흥국)에게 보고 및 국고에 세입조치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비의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업주관부서는 정부지원금의 정산금액,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과제 포기 또는 중단에 의한 반납·환수 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매년 2월말 방사청(방산진흥국)에게 보고 및 국고에 세입조치 조치하여야 한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31조(개발자금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으로부터 개발자금 사용내역 검토결과	제31조(개발자금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으로부터 개발자금 사용내역 검토결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통보되면 부당집행분에 대해 주관기업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개발자금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 환수액에 대해 지원사업 채투자 및 개발사업 장려금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작성 후 방사청(방산진흥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가 통보되면 부당집행분에 대해 주관기업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따른다. 삭제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32조(채권 확보) 채권 확보에 대한 사항은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따른다.	삭제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도폐지)
제33조(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동일) ②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1월 20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별지 제 3-3]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동일) ②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1월 20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별지 제3-3]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도 전중인 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항번호 조정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사후 관리 대상에 ‘성실수행’ 추가)
(신설)	제3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제 및 환수) ①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문위원회에 안전을 상	누락된 업무 수행절차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
	정하여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업무절차는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제34조(결과물의 귀속) ①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의 귀속은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권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전문기관은 무상 사용 및 제3자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출원서를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원사항의 국가소유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결과물의 귀속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따른다.	누락된 업무 수행절차 추가, 지재권 무상 허용 조건 명시 및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지재권 출원시 국가소유 여부심의)
제8장 기술료 징수 및 활용 제34조(기술료 징수 및 활용) 기술료 징수 및 활용은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35조(기술료 사용 및 관리) ①	제8장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제35조(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 기술료는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라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기술료에 대해 재무관리담당부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및 상이사항 보완

현행	개정안	비고																								
사업주관부서는 기술료 관리·사용 계획을 정책·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며, 방사청(방산진흥국)의 승인을 받아 징수된 기술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방사청에서 최종 승인된 기술료에 대해 재무관리담당부서가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해 기술료를 집행한다.	서가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해 기술료를 관리한다.	(경상기술료 신설, 기술료집행 사항 삭제)																								
별표 및 별지 (목 차) 별지 제4호 평가 관련 서식 (신설)	별표 및 별지 (목 차) 별지 제4호 평가 관련 서식 4-10.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위원 제척 관련 양식 추가 (감사결과 반영)																								
[별지 제1-1호] <u>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제제안요청서(RFP)</u> 1. ~ 7.(생략) 8. 주요개발요구사항⑧ 추가	[별지 제1-1호] <u>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제제안요청서(RFP)</u> 1. ~ 7.(현행과 동일) 8. 주요개발요구사항⑧ 다음의 개발요구조건은 주요 사항으로 세부적인 개발요구사항은 요구도 분석을 통해 확정하여야 함	주요 개발요구조건 의미 명확화																								
[별지 제1-2호] <u>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u> 1-1 ~ 1-3 (생략) 1-4. 국산화 개발 체계 및 업무 분장 ◦ 개발 체계 ◦ 업무 분장 (양식추가)	[별지 제1-2호] <u>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u> 1-1 ~ 1-3 (현행과 동일) 1-4. 국산화 개발 체계 및 업무 분장 ◦ 개발 체계 ◦ 업무 분장 <table><tr><th>구분</th><th>기업명</th><th>담당업무</th><th>비고</th></tr><tr><td>주관기업</td><td></td><td></td><td></td></tr><tr><td>주관기업의 외주기업</td><td></td><td></td><td></td></tr><tr><td>공동개발기업</td><td></td><td></td><td></td></tr><tr><td>공동개발기업의 외주기업</td><td></td><td></td><td></td></tr><tr><td>위탁연구기관</td><td></td><td></td><td></td></tr></table>	구분	기업명	담당업무	비고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외주기업				공동개발기업				공동개발기업의 외주기업				위탁연구기관				업무분장 양식 구체화
구분	기업명	담당업무	비고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외주기업																										
공동개발기업																										
공동개발기업의 외주기업																										
위탁연구기관																										

현행	개정안	비고
2-1 ~ 2-2 (생략) 2-3 개발관리 방안 ◦ 리스크 관리방안 - 개발 기간 중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 서술	2-1 ~ 2-2 (생략) 2-3 개발관리 방안 ◦ 리스크 관리방안 - 개발 기간 중 리스크 식별, 분석 및 관리 방안 서술	누락사항 추가
[별지 제1-2-1호] <u>개발 참여 인력 현황</u> 나. 과제참여 인력 전공 및 학위	[별지 제1-2-1호] <u>개발 참여 인력 현황</u> 나. 과제참여 인력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의미 명확화
[별지 제1-6호] <u>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u>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과제 참가자격 확인	[별지 제1-6호] <u>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u>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과제 참가자격 확인, 주관 기업으로 선정 시 협약관리	이용 범위에 주관기업선정 후 협약관리 분야 추가
[별지 제2-1호]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 (관계 자료의 제출 등) (1)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해당시)은 전문기관의 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해당시)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별지 제2-1호]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제1조 ~ 제4조 (현행과 동일) 제5조 (관계 자료의 제출 등) (1)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해당시)은 전문기관의 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및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지재권 출원 시 사전심의 및 성과제출)

현행	개정안	비고
지식재산권 등 유형적 결과물이 있을 경우 진도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하며, 요령 제33조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 성공 통보이후, 최대 5년까지 매년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시기에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전문기관과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운영요령을 따른다. 제7조 (협약의 해약 및 제재) (1) 전문기관과 ~ 해약할 수 있다. 가. (현행과 동일) 나. 사업수행자의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국산화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 아. (현행과 동일) 자. 개발목표가 다른 국산화개발에 의해 기 달성되어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차. ~ 거. (현행과 동일) (2) ~ (3) (현행과 동일) (4) 전문기관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에게 운영규정 제16조, 제19조 및 운용요령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중단, 불성실	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전문기관과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운용요령을 따른다. 제7조 (협약의 해약 및 제재) (1) 전문기관과 ~ 해약할 수 있다. 가. (현행과 동일) 나. 사업수행자의 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국산화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 아. (현행과 동일) 자. 개발목표가 다른 국산화개발에 의해 기 달성되어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 ~ 거. (현행과 동일) (2) ~ (3) (현행과 동일) (4) 전문기관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에게 운영규정 제16조, 제19조 및 운용요령 제21조, 제24조에 따라 실패 또는 협	오기수정 오기수정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오기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 또는 정부출연 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성과물의 귀속) (1)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정부소유로 하되 주관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2)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정부소유로 하되 주관기업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법인의 경우 개인의 명의로 출원할	약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 또는 정부출연 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성과물의 귀속) (1)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3) 주관기업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를 사전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결과물의 국가소유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기업은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시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으로 발생하였음과 개발관리번호를 명시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문장순화 및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기술료 완납 관련 사항, 개인 사업자 출 원 등)

현행	개정안	비고
수 없으며,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시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으로 발생하였음과 개발관리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국산화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사제품, 연구기자재 등의 소유권은 주관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정부소유로 하되 주관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 및 제3자에게 실시토록 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지원사업 과제 연구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삭제) (5) 국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 및 제3자에게 무상실시토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나.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라.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관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기술료 완납 내용수정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 및 의미명확화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및 내용수정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 내용수정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9조 (생략) 제10조 (정부납부 기술료의 징수) (1) 주관기업은 운영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화개발이 성공으로 평가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하면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 주관기업은 개발대상 부품의 최초 공급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업은 기술료를 조기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조기납부 시 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분할 납부시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다른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주관기업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료 또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	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9조 (현행과 동일) 제10조 (정부납부 기술료의 징수) (1) 주관기업은 국산화개발이 성공으로 평가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하면 운영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 기술료(이하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로 구분한다. (2) 주관기업은 운영규정 제31조의 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관기업은 개발대상 부품의 최초 공급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관기업은 기술료를 조기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조기납부 시 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 납부시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다른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주관기업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료 또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경상 기술료신설) 및 문장순화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문장순화

현행	개정안	비고
다. (이하 생략)	다. (현행과 동일)	
[별지 제3-2호]	[별지 제3-2호]	
<u>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u> <u>최종보고서</u>	<u>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u> <u>최종보고서</u>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목 차	
제 1 장 개발기술의 개요	제 1 장 개발기술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제 2 장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제 1 절 국산화개발 목표	제 1 절 국산화개발 목표	
※ 최종 목표 및 연차별 목표를 간략히 기술	※ RFP와 요구도 분석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최종 개발목표와 시험평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나열	최종보고서 내용 보완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 최초 RFP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 내용, 사유 및 관련근거 를 필히 기재	
제 2 절 세부 계획 및 개발내용	제 2 절 세부 계획 및 개발내용	
※ 구체적인 개발방법과 기술적 성과 기술	※ 구체적인 개발방법과 기술적 성과 기술	
※ 개발된 부품의 원리, 구성, 개발대 상품목의 내부 인터페이스 체계 등 기술	※ 개발된 부품의 원리, 구성, 개발대 상품목의 내부 인터페이스 체계 등 기술	
※ 시제품 제조방법, 시험평가 방법 및 결과 등 개발결과 기술 (추가)	※ 시제품 제조방법, 시험평가 수행방 법·내용 및 결과 등 개발결과 기술 ※ 개발목표 대비 달성여부와 수준을 도표형태로 서술 및 각 요소별 특 별한 기술적 성과 기술 ※ 개발중 발생한 시행착오 사항에 대한 현상, 원인 및 대책을 구체적 으로 기술 ※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 우 각 항목별 미달내용, 원인 분석 결과, 개선방안 등 소명내용을 구 체적으로 기술	목 표 달 성 방법, 실패 관련 내용 원인분석, 대책 수립 등 최종 보고서 내용내실화 (감사결과 반영)
(추가)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																																																																																																		
※ SE 활동내용 및 각 단계별 산출물, 각 단계별 Action Item 및 조치결과 등 기술 ※ 개발 중 발생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 내용 등 기술 ※ 실험데이터, 도면, 인증서,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 제 3 절 양산을 위한 생산공정 개발내용 ※ 생산 공정도, 제조작업문서, 생산 소요 장비, 치공구 도면 등 포함 제 3 장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 ※ 개발성과를 요약하고, 개발기술의 적용제품, 기대효과 등 기술 (추가)	※ SE 활동내용 및 각 단계별 산출물, 각 단계별 Action Item 및 조치결과 등 기술 ※ 개발 중 발생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 내용 등 기술 ※ 실험데이터, 도면, 인증서,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 제 3 절 양산을 위한 생산공정 개발내용 ※ 생산 공정도, 제조작업문서, 생산 소요 장비, 치공구 도면 등 포함 제 3 장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 ※ 개발성과를 요약하고, 개발기술의 적용제품, 기대효과 등 기술 ※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종료시 까지 획득한 개발성과, 획득된 기술의 활용 가능한 사항 및 기대효과 등 기술	실패시에도 성과 분석 및 활용방안 강구 의무화 (감사결과 반영)																																																																																																		
[별지 제3-7호] 기술료 납부계획서 <table><tr><th colspan="5">기술료 납부계획서 (개발관리번호 : ①)</th></tr><tr><td>과 제 명^②</td><td colspan="4"></td></tr><tr><td>기 업 명^③</td><td colspan="4"></td></tr><tr><td>정부출연금 (단위:원)</td><td>협약금액^④ (A)</td><td>잔 액^⑤ (B)</td><td>실사용금액^⑥ (A-B=C)</td><td>납부대상^⑦ 기술료 천원</td></tr><tr><td>납부방법^⑧ (해당란에 V 표시)</td><td colspan="4">☐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 ☐ 기타 :</td></tr><tr><th colspan="5">납 부 계 획</th></tr><tr><td>구 분</td><td>년 차</td><td>납 부 일</td><td>납부금액 (원)</td><td>비고</td></tr><tr><td>즉시완납^⑨</td><td>30일 이내</td><td>20 . . .</td><td></td><td>40% 감면 (원 감면)</td></tr><tr><td rowspan="4">연차별 납부^⑩ (보증보험 증권에 한함)</td><td>1차년도</td><td>20 . . .</td><td></td><td>30% 감면 (원 감면)</td></tr><tr><td>2차년도</td><td>20 . . .</td><td></td><td>20% 감면 (원 감면)</td></tr><tr><td>3차년도</td><td>20 . . .</td><td></td><td>10% 감면 (원 감면)</td></tr><tr><td colspan="2">보증보험증권할인금액</td><td></td><td>납부금액 중 5% 추가감면(원 감면)</td></tr><tr><td colspan="2">계</td><td></td><td></td><td>납부금액 총합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임</td></tr></table>	기술료 납부계획서 (개발관리번호 : ①)					과 제 명 ^②					기 업 명 ^③					정부출연금 (단위:원)	협약금액 ^④ (A)	잔 액 ^⑤ (B)	실사용금액 ^⑥ (A-B=C)	납부대상 ^⑦ 기술료 천원	납부방법 ^⑧ (해당란에 V 표시)	☐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 ☐ 기타 :				납 부 계 획					구 분	년 차	납 부 일	납부금액 (원)	비고	즉시완납 ^⑨	30일 이내	20 . . .		40% 감면 (원 감면)	연차별 납부 ^⑩ (보증보험 증권에 한함)	1차년도	20 . . .		30% 감면 (원 감면)	2차년도	20 . . .		20% 감면 (원 감면)	3차년도	20 . . .		10% 감면 (원 감면)	보증보험증권할인금액			납부금액 중 5% 추가감면(원 감면)	계				납부금액 총합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경상 기술료신설)																																					
기술료 납부계획서 (개발관리번호 : ①)																																																																																																				
과 제 명 ^②																																																																																																				
기 업 명 ^③																																																																																																				
정부출연금 (단위:원)	협약금액 ^④ (A)	잔 액 ^⑤ (B)	실사용금액 ^⑥ (A-B=C)	납부대상 ^⑦ 기술료 천원																																																																																																
납부방법 ^⑧ (해당란에 V 표시)	☐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 ☐ 기타 :																																																																																																			
납 부 계 획																																																																																																				
구 분	년 차	납 부 일	납부금액 (원)	비고																																																																																																
즉시완납 ^⑨	30일 이내	20 . . .		40% 감면 (원 감면)																																																																																																
연차별 납부 ^⑩ (보증보험 증권에 한함)	1차년도	20 . . .		30% 감면 (원 감면)																																																																																																
	2차년도	20 . . .		20% 감면 (원 감면)																																																																																																
	3차년도	20 . . .		10% 감면 (원 감면)																																																																																																
	보증보험증권할인금액			납부금액 중 5% 추가감면(원 감면)																																																																																																
계				납부금액 총합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별지 제3-7호] 기술료 납부계획서 <table><tr><th colspan="5">기술료 납부계획서 (개발관리번호 : ①)</th></tr><tr><td>과 제 명^②</td><td colspan="4"></td></tr><tr><td>기 업 명^③</td><td colspan="4"></td></tr><tr><td>매출발생일^④</td><td colspan="4">20 . . . (년차)</td></tr><tr><td>정부출연금 (단위:원)</td><td>협약금액^⑤ (A)</td><td>잔 액^⑥ (B)</td><td>실사용금액^⑦ (A-B=C)</td><td>납 부 대 상^⑧ 기술료(정액 기준) 원</td></tr><tr><td rowspan="2">납부방법^⑨ (해당란에 V 표시)</td><td colspan="4">☐ 정액 기술료 ☐ 경상 기술료 ※ 정액 기술료 납부시 ☐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 조기 납부 ☐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 ☐ 분할 납부 ()년(최대 5년)</td></tr><tr><td>구분</td><td>년차</td><td>납부기한</td><td>납부금액(원)</td><td>감면율(감면액)</td></tr><tr><td rowspan="10">납부 계획^⑩</td><td rowspan="5">정액 기술료</td><td>즉시완납</td><td>20 . . .</td><td></td><td>40%(원)</td></tr><tr><td>1차년도</td><td>20 . . .</td><td></td><td></td></tr><tr><td>2차년도</td><td>20 . . .</td><td></td><td></td></tr><tr><td>3차년도</td><td>20 . . .</td><td></td><td></td></tr><tr><td>4차년도</td><td>20 . . .</td><td></td><td></td></tr><tr><td rowspan="5">경상 기술료</td><td>5차년도</td><td>20 . . .</td><td></td><td></td></tr><tr><td>년차</td><td>납부기한</td><td>납부금액(원)(비율)</td><td>매출액(원)</td><td>누계(원)</td></tr><tr><td>착수기분료</td><td>20 . . .</td><td>(%)</td><td>(지원금액)</td><td></td></tr><tr><td>1차년도</td><td>20 . . .</td><td>(%)</td><td></td><td></td></tr><tr><td>2차년도</td><td>20 . . .</td><td>(%)</td><td></td><td></td></tr><tr><td></td><td>3차년도</td><td>20 . . .</td><td>(%)</td><td></td><td></td></tr><tr><td></td><td>4차년도</td><td>20 . . .</td><td>(%)</td><td></td><td></td></tr><tr><td></td><td>5차년도</td><td>20 . . .</td><td>(%)</td><td></td><td></td></tr></table>	기술료 납부계획서 (개발관리번호 : ①)					과 제 명 ^②					기 업 명 ^③					매출발생일 ^④	20 . . . (년차)				정부출연금 (단위:원)	협약금액 ^⑤ (A)	잔 액 ^⑥ (B)	실사용금액 ^⑦ (A-B=C)	납 부 대 상 ^⑧ 기술료(정액 기준) 원	납부방법 ^⑨ (해당란에 V 표시)	☐ 정액 기술료 ☐ 경상 기술료 ※ 정액 기술료 납부시 ☐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 조기 납부 ☐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 ☐ 분할 납부 ()년(최대 5년)				구분	년차	납부기한	납부금액(원)	감면율(감면액)	납부 계획 ^⑩	정액 기술료	즉시완납	20 . . .		40%(원)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4차년도	20 . . .			경상 기술료	5차년도	20 . . .			년차	납부기한	납부금액(원)(비율)	매출액(원)	누계(원)	착수기분료	20 . . .	(%)	(지원금액)		1차년도	20 . . .	(%)			2차년도	20 . . .	(%)				3차년도	20 . . .	(%)				4차년도	20 . . .	(%)				5차년도	20 . . .	(%)		
기술료 납부계획서 (개발관리번호 : ①)																																																																																																				
과 제 명 ^②																																																																																																				
기 업 명 ^③																																																																																																				
매출발생일 ^④	20 . . . (년차)																																																																																																			
정부출연금 (단위:원)	협약금액 ^⑤ (A)	잔 액 ^⑥ (B)	실사용금액 ^⑦ (A-B=C)	납 부 대 상 ^⑧ 기술료(정액 기준) 원																																																																																																
납부방법 ^⑨ (해당란에 V 표시)	☐ 정액 기술료 ☐ 경상 기술료 ※ 정액 기술료 납부시 ☐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을 일시 완납 (40% 감면) ☐ 조기 납부 ☐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 3차년도 내 완납(10%감면) ☐ 분할 납부 ()년(최대 5년)																																																																																																			
	구분	년차	납부기한	납부금액(원)	감면율(감면액)																																																																																															
납부 계획 ^⑩	정액 기술료	즉시완납	20 . . .		40%(원)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4차년도	20 . . .																																																																																																	
	경상 기술료	5차년도	20 . . .																																																																																																	
		년차	납부기한	납부금액(원)(비율)	매출액(원)	누계(원)																																																																																														
		착수기분료	20 . . .	(%)	(지원금액)																																																																																															
		1차년도	20 . . .	(%)																																																																																																
		2차년도	20 . . .	(%)																																																																																																
	3차년도	20 . . .	(%)																																																																																																	
	4차년도	20 . . .	(%)																																																																																																	
	5차년도	20 . . .	(%)																																																																																																	

현행	개정안	비고
작성요령 ① 개발관리번호 : 개발협약 시 부여받은 개발관리번호를 기입한다. ② 과제명 : 개발협약서의 과제명을 기입한다. ③ 기업명 :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명을 기입한다.(주관기업을 의미) ④ 협약금액 : 협약하여 지급된 총 정부출연금을 기입한다. ⑤ 잔액 : 협약하여 지급된 총 정부출연금 중 정산결과 잔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입한다. ⑥ 실사용금액 : 협약금액에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입한다. ⑦ 납부대상 기술료 : 정산결과 정부출연금 실사용금액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기술료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미만단위는 절사한다.) ⑧ 납부방법 : 납부 예정인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란에 V표를 체크한다.(30일 이내 현금 납부, 연차별 분할납부(1년, 2년, 3년 납부 방법을 선택함), 기타(내용 적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체크한다.) ⑨ 즉시원납 - 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계획서와 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보험증권은 제출하지 않으며 납부금액의 40% 감면이 적용된다.(납부금액은 납부대상 기술료 x 0.6으로 계산한다.) ⑩ 연차별 납부 -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납부일은 즉시 완납이 종료된 시점의 1년, 2년, 3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입한다. - 납부금액은 감면금액이 적용된 금액을 기입하며, 비교란에는 감면적용율과 감면금액을 기입한다. 1차년도 완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x 0.7로 적용한다. 비교란에는 30% 감면과 해당 감면 금액을 기입한다. 2차년도 분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납부 대상 기술료 x 0.8로 적용한다. 이 때, 2차년도 완납의 경우 연차별 납부 금액의 합이 감면 적용된 금액과 일치하면 된다. 비교란에는 20%의 감면과 해당 감면 금액을 기입한다. 3차년도 분납의 선택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은 기술료로 적용한다. 비교란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분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차별 납부금액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가 있다. - 보증보험증권할인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에 해당되며, 납부금액의 합 x 0.05로 적용한다. 비교란에는 해당 감면금액을 기입한다. - 계는 납부금액의 총합에서 보증보험증권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⑪ 기업명과 대표자명을 기입하며, 협약시 사용한 인감을 날인한다. ⑫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금액을 모두 각각 기입하며, 총 매수를 함께 작성한다.	작성요령 ① 개발관리번호 : 개발협약 시 부여받은 개발관리번호를 기입한다. ② 과제명 : 개발협약서의 과제명을 기입한다. ③ 기업명 :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명을 기입한다.(주관기업을 의미) ④ 매출발생일 : 매출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입한다(경상기술료의 경우 년차 별도 기입) ⑤ 협약금액 : 협약하여 지급된 총 정부출연금을 기입한다. ⑥ 잔액 : 협약하여 지급된 총 정부출연금 중 정산결과 잔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입한다. ⑦ 실사용금액 : 협약금액에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입한다. ⑧ 납부대상 기술료 : 정산결과 정부출연금 실사용금액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정액기술료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미만단위는 절사한다.) ⑨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납부 예정인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란에 V표를 표시한다.(정액 기술료에 대해서는 일사·조가·분할 납부중 선택) ⑩ 납부계획 : 선택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금액, 예정일 등을 기입한다.(경상기술료의 경우 기 납부 실적 및 당해 납부계획만 작성 ex) 1차년의 경우 착수기본료와 1차년도 납부계획 작성) ⑪ 기업명과 대표자명을 기입하며, 협약시 사용한 인감을 날인한다. ⑫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금액을 총 매수와 함께 모두 각각 기입하며, 매출발생 증빙자료는 계약품목, 계약일자,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체계업체 등과의 계약서 첨부한다.	

[별지 제4-3호]				[별지 제4-3호]				평가내실화를 위하여 평가요소 조정 및 평가요령 추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현장평가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현장평가서				
<첨부 #1>				<첨부 #1>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현장평가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현장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가중치	
1. CEO의 경영역량	10	1. CEO의 경영능력	5	1. CEO의 경영역량	10	1. CEO의 경영능력 및 핵심부품사업에 대한 이해도 ^①	5	
		2. CEO의 국산화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	5			2. CEO의 개발대상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성공 의지	5	
2. 국산화개발 인프라	22	1. 국산화개발전담조직 여부	5	2. 국산화개발 인프라	22	1. 국산화개발전담조직 여부	5	
		2.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및 수상(인증)실적	3			2.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및 수상(인증)실적 ^②	3	
		3. 연구개발투자비율	4			3. 과제수행계획서상 사내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상태 및 활용도	4	
		4.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5			4.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5	
		5. 형상관리, 구매, 품질보증 업무 체계 구축여부(DQMS개발 분야 인증 시 5)	5			5. 형상관리, 구매, 품질보증 업무 체계 구축여부 ^③	5	
3. 과제책임자등 개발참여인력	15	1. 기술적 개발 역량	5	3. 과제책임자 등 개발 참여인력	15	1. 과제책임자의 사업관리 능력 및 핵심부품사업절차 이해도	5	
		2. 유사 부품 개발 참여 실적, 근무경력 및 담당 업무의 유사성	5			2. 유사 부품 개발 참여 실적, 근무경력 및 담당 업무의 유사성	5	
		3. 개발 관리 능력 및 사업절차 이해도	5					
4. 유사품목	18	1. 개발대품목과 유사 부품의 자	6					

현행				개정안				비고
개발 및 양산실적		체개발 성공 실적		4. 유사품목 개발 및 양산 실적	18	3. 과제참여 인력별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5	
		2. 개발대상품목과 유사 부품의 자체 양산 실적	6			1. 개발대품목과 유사 부품의 자체 개발 성공 실적 ^④	6	
		3. 유사품목의 개발 및 양산 시 품질수준	6			2. 개발대상품목과 유사 부품의 자체 양산 실적 ^⑤	6	
5. 개발 능력, 개발관리체계	15	1. 체계공학에 의한 개발관리 체계 구축여부	6	5. 개발 능력, 개발관리 체계	15	3. 유사품목의 개발 품질수준 ^⑥	3	
		2. 시뮬레이션, 설계해석 능력	5			4. 유사품목의 양산 시 품질수준 ^⑥	3	
		3. 부족 분야에 대한 보완 방안의 적절성	4			1. 체계공학에 의한 개발관리 체계 구축여부	6	
6. 시제작 능력	10	1. 치공구, 생산 공정 설계 능력	4	6. 시제작 능력	10	2. 시뮬레이션, 설계해석 능력	5	
		2. 자체 생산 능력 보유 및 품질관리체계	3			3. 부족 분야에 대한 보완 방안의 적절성	4	
		3. 시제작 적용 예정 장비의 상태	3			1. 치공구, 생산 공정 설계 능력	4	
7. 시험평가 능력	10	1. 시험평가 전문인력 보유 여부	4	7. 시험평가 능력	10	2. 자체 생산 능력 보유 및 품질관리체계	3	
		2. 사업관련 시험설비의 적용가능성 및 공인 기관(KOLAS 등) 인증 여부	4			3. 시제작 적용 예정 장비의 상태	3	
		3. 유사부품 개발 시 시험평가 이력	2			1. 시험평가 전문인력 보유 여부 ^⑦	4	
				평가요령(세부내용 덧붙임 참조)				
[별지 제4-5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최종현장점검표 4. 국산화개발 현황 (신설) 사. 기타참고 사항				[별지 제4-5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최종현장점검표 4. 국산화개발 현황 사. 개발 관련 산출물 작성 상태(각 단계별 산출물, Action Item 조치현황 등) 아. 기타참고 사항(개발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실패 시 진도만회를 위한 노력 등)				평가내실화를 위한 평가요소 추가
[별지 제4-6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최종평가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표(Ⅱ) <개발 성공 시>				[별지 제4-6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최종평가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표(Ⅱ) <개발 성공 시>				성과, 시행착오 중심 보고서작성 유도를 위한 배점강화 (감사결과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 점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 점	
1. 최종보고서의 충실도 (20)	◦ 최종보고서의 충실도		10	1. 최종보고서의 충실도 (20)	◦ 최종보고서의 충실도 (기술적 구현방법의 구체적 기술, 개발중 발생한 시행착오 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의 구체적 서술 등)		15	
	◦ SE산출물의 충실도		10		◦ SE산출물의 충실도		5	

현행			개정안			비고																																																													
2. 개발 완성도 (30)	◦ 수입품 대비 성능, 신뢰성, 편의성 등 품질향상 여부	10	2. 개발 성과 (30)	◦ 수입품 대비 성능, 신뢰성, 편의성 등 품질향상 여부	10	반영)																																																													
	◦ 수입품과 차별화된 설계방식 구현	10		◦ 수입품과 차별화된 설계방식 구현	10																																																														
	◦ 수입품 대비 가격 절감 (60%이하 : 10, 이하 5% 단위로 1점씩 차감 예 65% : 9, 80% : 6, 90% : 4)	10		◦ 수입품 대비 가격 절감 (60%이하 : 10, 이하 5% 단위로 1점씩 차감 예 65% : 9, 80% : 6, 90% : 4)	10																																																														
3. 개발자금 집행의 적정성 (10)	◦ 개발자금 집행의 불인정 금액, 불필요한 집행 등 낭비됨이 없이 용도에 맞게 집행여부	10	3. 개발자금 집행의 적정성 (10)	◦ 개발자금 집행의 불인정 금액, 불필요한 집행 등 낭비됨이 없이 용도에 맞게 집행여부	10	오기수정																																																													
4. 일정, 국산화율 (20)	◦ 개발일정 준수 여부 (3개월 이상 조기달성: 20, 최초 협약기간내 달성: 15, 체계시행지연으로 인한 연장: 10, 기타 사유로 연장: 5)	10	4. 일정, 국산화율 (20)	◦ 개발일정 준수 여부 (3개월 이상 조기달성: 20, 최초 협약기간내 달성: 15, 체계시행지연으로 인한 연장: 10, 기타 사유로 연장: 5)	10																																																														
	◦ 목표 국산화율 달성 정도 (95%이상 : 10, 90%이상: 9, 85%이상 : 8, 80%이상 7, 75%이상 : 6, 70%이상 : 5, 60%이상 : 3, 50%이상: 1	10		◦ 국산화율 달성 정도 (95%이상 : 10, 90%이상: 9, 85%이상 : 8, 80%이상 7, 75%이상 : 6, 70%이상 : 5, 60%이상 : 3, 50%이상: 1	10																																																														
5 개발성과 관리 (20)	◦ 산업재산권 획득 실적 (건당 해외특허 5점, 국내특허 3점, 실용신안 2점, 디자인 1점)	10	5 개발성과 관리 (20)	◦ 산업재산권 획득 실적 (건당 해외특허 5점, 국내특허 3점, 실용신안 2점, 디자인 1점, 동일내용에 대해 국내외 특허 획득시 해외만 인정)	10	중 복 배 점 방지																																																													
	◦ 논문 발표 실적 (건당 SCI/SSCI 5점, SCIE 3점, 한국연구재단 등재논문 2점, 해외일반저널게재논문 1점, 기타 0.5점)	10		◦ 논문 발표 실적 (건당 SCI/SSCI 5점, SCIE 3점, 한국연구재단 등재논문 2점, 해외일반저널게재논문 1점, 기타 0.5점)	10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표(III) <개발 실패 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표(III) <개발 실패 시>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달성정도, 질적수준, 연구성실도 중심의 평가 및 시행 착오 중심보고서 작성 유도를 위한 평가 기준 및 배점조정 (감사결과																																																													
<table><tr><th>평가항목</th><th>중점 검토사항</th><th>배 점</th></tr><tr><td rowspan="14">개발성과 (70)</td><td>◦ 요구도분석(SRR), 관련 산출물 작성완료 및 Action Item 조치여부</td><td>3</td></tr><tr><td>◦ 기본설계, 기본설계검토(PDR) 완료 여부</td><td>3</td></tr><tr><td>◦ 상세설계, 상세 설계검토(CDR) 완료 여부</td><td>3</td></tr><tr><td>◦ 상세 설계검토 관련 산출물 작성 및 Action Item 조치 완료 여부</td><td>5</td></tr><tr><td>◦ 시험평가계획(TEMP) 완성본 제출 및 내용 충실도</td><td>2</td></tr><tr><td>◦ 시험평가 준비상태 검토(TRR) 완료여부</td><td>3</td></tr><tr><td>◦ 시험평가계획(TEMP) 확정본 제출 여부</td><td>5</td></tr><tr><td>◦ 적용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 제작 완료여부</td><td>5</td></tr><tr><td>◦ 기능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td><td>5</td></tr><tr><td>◦ 성능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td><td>5</td></tr><tr><td>◦ 환경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td><td>3</td></tr><tr><td>◦ 신뢰성(내구성)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td><td>3</td></tr><tr><td>◦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수행여부</td><td>20</td></tr><tr><td>◦ 운용 시험평가 수행여부</td><td>5</td></tr></table>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 점		개발성과 (70)	◦ 요구도분석(SRR), 관련 산출물 작성완료 및 Action Item 조치여부	3	◦ 기본설계, 기본설계검토(PDR) 완료 여부	3	◦ 상세설계, 상세 설계검토(CDR) 완료 여부	3	◦ 상세 설계검토 관련 산출물 작성 및 Action Item 조치 완료 여부	5	◦ 시험평가계획(TEMP) 완성본 제출 및 내용 충실도	2	◦ 시험평가 준비상태 검토(TRR) 완료여부	3	◦ 시험평가계획(TEMP) 확정본 제출 여부	5	◦ 적용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 제작 완료여부	5	◦ 기능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	5	◦ 성능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	5	◦ 환경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	3	◦ 신뢰성(내구성)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	3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수행여부	20	◦ 운용 시험평가 수행여부	5	<table><tr><th>평가항목</th><th>중점 검토사항</th><th>배 점</th></tr><tr><td rowspan="13">개발 성과 (65)</td><td>◦ 요구도분석 완료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td><td>2</td></tr><tr><td>◦ 기본설계 방안 수립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td><td>2</td></tr><tr><td>◦ 상세설계 방안 수립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td><td>5</td></tr><tr><td>◦ 시험평가계획(TEMP) 완성본 제출 및 내용 충실도</td><td>3</td></tr><tr><td>◦ 시험평가계획(TEMP) 확정 여부</td><td>3</td></tr><tr><td>◦ 적용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 제작 및 시험충족</td><td>3</td></tr><tr><td>◦ 기능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td><td>5</td></tr><tr><td>◦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td><td>5</td></tr><tr><td>◦ 환경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td><td>5</td></tr><tr><td>◦ 신뢰성(내구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td><td>5</td></tr><tr><td>◦ 체계적합성 시험평가의 충족여부</td><td>15</td></tr><tr><td>◦ 운용 시험평가 수행여부</td><td>2</td></tr><tr><td>◦ 최종보고서의 실패 원인 분석, 대책 및 획득한 성과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성실성</td><td>10</td></tr></table>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 점	개발 성과 (65)	◦ 요구도분석 완료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	2	◦ 기본설계 방안 수립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	2	◦ 상세설계 방안 수립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	5	◦ 시험평가계획(TEMP) 완성본 제출 및 내용 충실도	3	◦ 시험평가계획(TEMP) 확정 여부	3	◦ 적용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 제작 및 시험충족	3	◦ 기능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	5	◦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	5	◦ 환경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	5	◦ 신뢰성(내구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	5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의 충족여부	15	◦ 운용 시험평가 수행여부	2	◦ 최종보고서의 실패 원인 분석, 대책 및 획득한 성과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성실성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 점																																																																	
개발성과 (70)	◦ 요구도분석(SRR), 관련 산출물 작성완료 및 Action Item 조치여부	3																																																																	
	◦ 기본설계, 기본설계검토(PDR) 완료 여부	3																																																																	
	◦ 상세설계, 상세 설계검토(CDR) 완료 여부	3																																																																	
	◦ 상세 설계검토 관련 산출물 작성 및 Action Item 조치 완료 여부	5																																																																	
	◦ 시험평가계획(TEMP) 완성본 제출 및 내용 충실도	2																																																																	
	◦ 시험평가 준비상태 검토(TRR) 완료여부	3																																																																	
	◦ 시험평가계획(TEMP) 확정본 제출 여부	5																																																																	
	◦ 적용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 제작 완료여부	5																																																																	
	◦ 기능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	5																																																																	
	◦ 성능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	5																																																																	
	◦ 환경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	3																																																																	
	◦ 신뢰성(내구성) 시험평가 수행 결과 기준충족여부	3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수행여부	20																																																																	
	◦ 운용 시험평가 수행여부	5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 점																																																																	
개발 성과 (65)	◦ 요구도분석 완료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	2																																																																	
	◦ 기본설계 방안 수립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	2																																																																	
	◦ 상세설계 방안 수립 및 관련 산출물의 충실도	5																																																																	
	◦ 시험평가계획(TEMP) 완성본 제출 및 내용 충실도	3																																																																	
	◦ 시험평가계획(TEMP) 확정 여부	3																																																																	
	◦ 적용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 제작 및 시험충족	3																																																																	
	◦ 기능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	5																																																																	
	◦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	5																																																																	
	◦ 환경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	5																																																																	
	◦ 신뢰성(내구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충족	5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의 충족여부	15																																																																	
	◦ 운용 시험평가 수행여부	2																																																																	
	◦ 최종보고서의 실패 원인 분석, 대책 및 획득한 성과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성실성	10																																																																	

현행			개정안			비고	
개발관리 적절성 (18)	◦ 개발관리 활동의 적절성 정도 (매우 적절: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4	개발과정의 성실성 (30)	◦ 개발관리 활동의 적절성 정도 (매우 적절: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4	반영)	
	◦ 진도만회를 위한 노력의 적절성 정도 (매우 적절: 4, 양호: 3, 노력을 기함: 2, 미흡: 1)	4		◦ 진도만회를 위한 노력의 적극성 정도 (매우 적극적: 5, 양호: 3, 노력을 기함: 2, 미흡: 1)	5		
	◦ 개발자금 집행의 불인정 금액, 불필요한 집행 등 낭비됨이 없이 용도에 맞게 집행여부 (매우 적절: 5, 양호: 3, 미흡: 1, 부적절: 0)	5		◦ 개발자금 집행의 불인정 금액, 불필요한 집행 등 낭비됨이 없이 용도에 맞게 집행여부 (매우 적절: 4, 양호: 3, 미흡: 1, 부적절: 0)	4		
	◦ 중간평가 보완요구사항 조치 완료 및 적절성 여부 (매우 적절: 5, 양호: 3, 노력을 기함: 2, 미흡: 1)	5		◦ 중간평가 보완요구사항 조치 완료 및 적절성 여부 (적기조치완료: 5, 조치완료: 3, 노력을 기함: 1, 미흡: 0)	5		
				◦ SRR, PDR, CDR, TRR시 식별된 Action Item의 조치 완료 및 적절성 여부 (적기조치완료: 5, 조치완료: 3, 노력을 기함: 1, 미흡: 0)	5		
	협력체계의 적절성 (10)	◦ 협력이 필요한 모든 대상기관과 공식적인 협약 여부	5	◦ 협력이 필요한 모든 대상기관과 공식적인 협약 여부	3		
		◦ 협력기관과의 적절한 협력진행 정도 (매우 적절: 5, 양호: 3, 노력을 기함: 2, 미흡: 1)	5		◦ 협력기관과의 적절한 협력진행 정도 (매우 적절: 5, 양호: 3, 노력을 기함: 2, 미흡: 1)		5
	성과관리여부 (2)	◦ 산업재산권 획득 실적	1	개발성과관리 (5)	◦ 산업재산권 획득 실적 (건당 해외특허 3점, 국내특허 2점, 실용신안 1점, 디자인 0.5점, 동일내용에 대해 국내외 특허 획득시 해외만 인정)		3
		◦ 논문 발표 실적	1		◦ 논문 발표 실적 (건당 SCI/SSCI 2점, SCIE 1.5점, 한국연구재단 등재논문 1점, 기타 0.5점)		2
	(신설)			[별지 제4-10호] 제적·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위원제적 관련양식 추가 (감사결과 반영)

덧붙임

평가요령
① CEO의 경영능력 및 핵심부품사업에 대한 이해도 * 경영능력과 사업이해도를 구분하여 배점 및 합산 - 경영능력: 상: 3, 중: 2, 하: 1 (CEO와 면담 또는 조사를 통해 판단) - 핵심부품사업 이해도: 높음: 3, 일부 내용만 이해: 2, 타 사업과 구분못함: 1 ②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및 수상(인증)실적 *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및 국가·공공기관·단체로부터 수상실적 확인 (특허, 실용신안, 수상건수 합산) 10건이상 보유: 3, 5건이상 보유: 2, 1건이상 보유: 1 ③ 형상관리, 구매, 품질보증 업무 체계 구축여부 * 공동개발기업에서만 보유할 경우 50%인정 DQMS설계·개발·제조분야 또는 AS9100, TS16949 인증: 5, DQMS제조 분야 인증: 4, ISO9000: 3, 3개분야 모두 사내절차 완비: 2 3개분야 중 일부분야 사내절차보유: 1 ④ 개발대품목과 유사 부품의 자체개발 성공 실적 * 개발대상 과제(부품)과 원리와 기능이 유사한 부품(기술)의 실적만 인정

- * 공동개발기업에서만 실적이 있을 경우 50%인정
- * 민관공동투자사업과제는 구매조건부 사업과제에 포함
- 핵심 및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사업 5개 과제이상 성공 : 6,
- 핵심 및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사업 3개 과제이상 성공 : 5,
- 국가연구개발과제 3개이상 성공 : 4,
- 핵심 및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사업 2개 과제 또는 일반부품 10개 과제(×품목) 이상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2개이상 성공: 3,
- 핵심 및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사업 1개 과제 또는 일반부품 5개 과제(×품목) 이상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1개이상 성공 : 2, 일반부품 성공실적 : 1

⑤ 개발대상품목과 유사 부품의 자체 양산 실적

- * 개발대상 과제(부품)과 원리와 기능이 유사한 부품의 실적만 인정
- * 공동개발기업에서만 실적이 있을 경우 50%인정
- 5개 이상 품목을 5년이상 양산 : 6, 3개 이상 품목을 5년이상 양산 : 5,
- 5개 이상 품목을 3년이상 양산 : 4, 3개 이상 품목을 3년이상 양산 : 3,
- 5개 이상 품목을 양산 : 2, 3개 이상 품목을 양산 : 1

⑥ 유사품목의 개발 품질수준

- * 개발대상 과제(부품)과 원리와 기능이 유사한 부품의 실적만 인정
- * 공동개발기업에서만 실적이 있을 경우 50%인정
- 부품국산화 개발 성공률 50% 이상 : 3, 30%이상 : 2, 10% 이상 1,

⑦ 유사품목의 양산 시 품질수준

- * 개발대상 과제(부품)과 원리와 기능이 유사한 부품의 실적만 인정
- * 공동개발기업에서만 실적이 있을 경우 50%인정
- 최근 5년내 사용자불만 실적없음 : 3, 최근 3년내 : 2, 최근 1년내 : 1,
- 양산실적없음 : 0

⑧ 시험평가 전문인력 보유 여부

-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 시험평가 계획수립 가능인력 및 자체보유시험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수행전문인력 보유 : 4,
- 시험평가 계획수립 가능인력 또는 시험평가 전문인력 보유 : 2,
- 일부 시험평가 항목 수행가능 인력 보유 : 1

⑨ 사업관련 시험설비의 적용가능성 및 공인기관(KOLAS 등) 인증 여부

-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 체계시험을 제외한 전 분야 인증 : 4, 일부 분야 인증 : 2, 미보유 : 0

⑩ 유사부품 개발 시 시험평가 이력⑩

-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 체계시험을 제외한 RFP상 전체항목자체수행 실적 : 2, 부분적 자체수행실적 : 1